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 등의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원치료 및 격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외출을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참정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비 고

제1호부터 제5호에도 불구하고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외출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별도의 연락 없이도 보건소장이 외출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외출 대상자에게 전화, 우편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에 전자적인 방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 여부 및 절차를 통지해야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1. 5. 11.> <u>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제23조 관련)</u> 1. ~ 5.(생략) <u><신설></u>	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1. 5. 11.> <u>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제23조 관련)</u> 1. ~ 5.(현행과 같음) <u>비고</u> <u>제1호부터 제5호에도 불구하고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외출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별도의 연락 없이도 보건소장이 외출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외출 대상자에게 전화, 우편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에 전자적인 방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 여부 및 절차를 통지해야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43) 719 - 7136